

2019.06.03

'불법 폐기물 수출입신고' 관련 협조 사항 안내

I. 개요

관세청 내 '불법 폐기물 수출입 신고' 관련 관세 행정 협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 주요사항

1. 배경

- 최근 필리핀, 베트남으로 관계기관의 승인 받은 폐기물과 다른 물품이 수출
- 승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 사례 적발
- 수출 목적의 향만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방치된 폐기물 지속적 발견

2. 협조 관련 사항

1) 관세청·환경부 현 시행

- 불법 폐기물 수출입 방지를 위한 협업 검사 및 정보 공유 확대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통관 심사 및 검사 강화

2) 주체별 협조 내용

▶ 수출입 신고 또는 운반 수탁자

- 수출입 신고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화물이 폐기물인 경우
현품과 환경부 승인서 등 철저한 서류 확인 요청
- 폐기물이 승인 받은 물품과 상이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세관 통관·화물부서 신고 필요

2019.06.03

'불법 폐기물 수출입신고' 관련 협조 사항 안내

II. 주요사항

2. 협조 관련 사항

▶ 보세구역 관리자

- 보세구역 내 폐기물 반입 시 단순보관 목적인 경우 반입 제한
- 불법 폐기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세관 통관·화물부서 신고 필요

▶ 폐기물 운반자

- 운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될 수 있어 유의 및 신고 필요

3)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대상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목록』 고시 별지 및 별표2)

▶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

- ① 바젤협약 부속서 I 및 VIII 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III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진 것
- ② 부속서II에서 정한 폐기물
- ③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 수출입 규제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도 및 대상 물품 : "불임"

◇ 관세청 수출담당자 전화번호 : 031-547-3948

붙임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도 및 대상 물품

□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제도 개요

구분	허가제도	신고제도
법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6조 및 제10조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대상	바젤협약 A목록 및 OECD 황색 목록 등 86개 품목	허가대상 외의 25개 품목
절차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 허가 및 관련국의 수출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 신고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허가신고 관할구역	(수출) 배출 사업장 소재지 및 보관장소 (수입) 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수출업자 요건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지자체·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수입업자 요건	폐기물취급자(직접수입·처리) 및 일반인(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처리)	

- (대상 목록)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대상품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목록’ 환경부 고시(제2017-188호, '17.10.19) 별지 및 별표2에 규정

□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

- ① 바젤협약 부속서 I 및 VIII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III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진 것
- ② 부속서II에서 정한 폐기물
- ③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구분	바젤협약폐기물	OECD 황색폐기물	계
금속 관련 폐기물	19종 (A1010~A1190)	3종 (AA010~AA190)	22종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6종 (A2010-A2060)	6종 (RB020~AB150)	12종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20종 (A3010-A3200)	10종 (AC020~AC270)	30종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16종 (A4010-A4160)	4종 (AD090-AD150)	20종
기타	2종 (바젤협약 부속서II)		2종
합계	63개 품목	23개 품목	86종

□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 수출입 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 고무, 폐전선 등)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2. 오니류	14. 폐석재류
3. 광재류	15. 폐타이어
4. 분진	16. 폐식용유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18.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19. 왕겨 및 쌀겨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IX B1120에 해당)	20. 폐목재류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1. 폐토사류
10. 폐페인트 및 락카	22. 폐주물사 및 폐사
11. 폐동식물유	23. 폐섬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24. 폐금속류
	25. 폐유리